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4
------------	------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의자 : 추경호 · 최교일 · 홍문종  
유기준 · 백승주 · 김상훈  
이만희 · 박명재 · 엄용수  
송석준 · 송희경 · 안상수  
윤상직 · 이현승 · 강석진  
곽대훈 · 주광덕 · 김석기  
김선동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단속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음. 따라서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임(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권한 위탁의 한계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단속 업무를 두 기관[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바, 어느 한

기관만의 단독 수행은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단속 규정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 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관세청장,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관세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 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관세청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으로 한다.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 관세청장, 특별시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u>시·도지사</u> 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 관세청장, 시·도지사-----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해양수산부장관이나</u> 시·도지사는 제5조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  
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  
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  
표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1. • 2. (생략)

## <신 설>

### 3. ~ 7. (생략)

## ⑤ (생략)

#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4) \_\_\_\_\_

##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관세청

### 3. ~ 7.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한 교육) ① -----  
---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  
-----  
-----  
-----  
-----  
-----  
-----  
-----

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u>해양수산부장관</u> ,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 ----- ----- <u>해양수산부장관</u> , <u>관세청장</u> 또는----- ----- ----- ----- ----- ----- ----- ----- ----- -----.
② · ③ (생 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u>해양수산부장관</u> , <u>관세청장</u> 또는----- ----- ----- ----- ----- ----- ----- ----- -----.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u>해양수</u>

